

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세정지원 대상

- '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*인 「조특법」 상 중소기업** 법인으로서는

*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

** '18사업연도('18년 1~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
- '20년에 상시근로자 수*를 '19년 대비 2%·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

* 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

<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>

'18사업연도 수입금액	3백억 미만	3백억 이상 ~ 1천5백억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4% 이상

세정지원 내용

-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제출방법

- (인터넷접수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『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』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

* 홈택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) - 신청/제출 - 신청업무 -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- (서면접수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- 제출기한 : 2019. 12. 05.(목)